

1. 제정이유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13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 0000. 00. 0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 및 지역 재난관리지원기업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절차를 마련하고,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안 제3조)

- 1)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할 때는 미리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당 공급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2)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및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수탁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함

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안 제7조)

- 1) 시·도지사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할 때는 미리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당 공급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2)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및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함

다.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안 제11조)

- 1)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할 때는 미리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당 물류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함
- 2)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공모 및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

라.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안 제21조)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을 정할 때에는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이 제공하는 수요예측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함

마.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안 제22조)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할 때에는 그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무원이나 직원을 재물조사요원으로 지정함

바. 특별재물조사(안 제23조)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특별재물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재물조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조사 기준일 1개월 전까지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사.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안 제32조)

정보센터운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 대상으로 지정신청서와 필요한 첨부 서류를 정함

아. 동원명령서(안 제35조)

시·도지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재난관리자원을 동원명령 할 경우 재난관리자원의 동원명령서에 따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관리기관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정한 관리기관(이하 “지정관리기관”이라 한다)의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의 운영기관(이하 “정보센터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알려야 한다.

②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은 지정관리기관의 현황을 법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지정 관리기관의 장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 또는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장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제3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6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수탁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급업자 중에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당 공급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청을 받은 공급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절차를 거치는 경우 응모한 공급업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동의를 받은 공급업자로 본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수탁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공모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대상
 2. 해당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
 3. 임무수행계획서의 작성 지침
 4. 그 밖에 공모신청서의 작성 방법 및 제출 등 공모 절차에 필요한 사항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및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수탁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서)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수탁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은 법인의 명칭 또는 본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수탁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수탁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서를 발급하고, 변경된 사항을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수탁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수탁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서

를 발급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기간) ①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수탁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지정 기간을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당 재난관리자원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를 부착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급업자 중에서 관할구역 재난관리지원기업(이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당 공급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청을 받은 공급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절차를 거치는 경우 응모한 공급업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동의를 받은 공급업자로 본다.

③ 시·도지사는 영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모 절차를 거쳐 지역

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대상
 2. 해당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
 3. 임무수행계획서의 작성 지침
 4. 그 밖에 공모신청서의 작성 방법 및 제출 등 공모 절차에 필요한 사항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및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서) ① 시·도지사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은 법인의 명칭 또는 본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서를 발급하고, 변경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

을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기간) ①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지정 기간을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당 재난관리자원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를 부착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물류기업 중에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당 물류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청을 받은 물류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영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모 절차를 거치는 경우 응모한 물류기업은 제1항 전단에 따른 동의를 받은 물류기업으로 본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모 절차를 거쳐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대상

2. 해당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임무

3. 임무수행계획서의 작성 지침

4. 그 밖에 공모신청서의 작성 방법 및 제출 등 공모 절차에 필요한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공모 및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은 법인의 명칭 또는 본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서를 발급하고, 변경된 사항을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기간) ①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지정 기간을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표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나타내는 표시를 운송 수단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표시를 부착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제3장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인력

제15조(자원관리관 등의 교육)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전문교육: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원관리관

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

다.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

2. 실무자 전문교육: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원출납관

나. 자원운용관

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원출납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

라.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원출납관 또는 자원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

마. 영 제52조제3항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 담당자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2항제2호에 따른 실무자 전문교육에 관한 신규교육을 받은 자는 그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고, 제2항제1호에 따른 관리자 전문교육에 관한 신규교육을 받은 자는 필요한 경우 수시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전문교육의 이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전문교육: 7시간 이상

2. 실무자 전문교육: 14시간 이상

⑥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2.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 소속의 교육기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제16조(재난관리물품표준의 제정 등) ① 영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관표준 및 국가표준(이하 “재난관리물품표준”이라 한다)은 재난관리물품의 기능성·표준성·경제성 및 최신성 등을 고려하여 제정하거나 선정한다.

② 재난관리물품표준은 재난관리물품이 필요한 시기와 품질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그 적용 30일 전까지 제정하거나 선정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표준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재난관리물품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 ①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3년마다 재난관리물품표준을 확인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재난관리물품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난관리물품표준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 발전 등으로 적용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재난관리물품표준에 대하여는 수시로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물품표준(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관표준을 말한다. 이 항에서 같다)을 개정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물품표준을 개정할 때에는 개정된 재난관리물품표준을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관리물품의 분석 및 시험) ①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품표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분석 및 시험을 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분석 및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석 및 시험에 드는 비용은 해당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부담한다.

제19조(재난관리물품표준의 작성) ①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품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재난관리물품표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표준의 작성을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성에 드는 비용은 해당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부담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품표준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20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에 관한 표준서식) ①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입·출력 자료서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의 취득 및 처분대장
2. 별지 제9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관리대장
3.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청구서
4. 별지 제11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출급증
5. 별지 제12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반납 및 인수증

② 제1항 각 호의 서식(이하 “표준서식”이라 한다)에는 취득가격을 입력해야 하고, 취득가격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시가(時價)·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따른 가격을 입력한다. 다만, 표준서식 중 재난관리물품 관리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가격평가를 한 경우 그 가격을 입력하여야 한다.

1.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
2.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른 지방회계기준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기관회계기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관리기관에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득가격에는 재난관리물품의 대금과 그 밖의 재난관리물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수수료, 설비비, 운반비 및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④ 표준서식에 재난관리물품의 상황을 정리할 때에는 별표 3의 재난관리물품의 정리기준에 따른다.

⑤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이 교체된 경우 전임자는 그 교체된 날의 전날 현재를 기준으로 인계해야 할 표준서식과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가 인계 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이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1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25조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을 정할 때에는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이 제공하는 수요예측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정하고,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2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정기재물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무원등을 재물조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28조제4항에 따라 수시로 재물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자원관리관이나 자원출납관으로 하여금 소관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재물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관, 제2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이나 자원출납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할 때에는 별표 4의 재난관리물품 상태의 분류기준에 따라 그 상태를 분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상태를 분류하는 경우에는 관능검사 [사람의 오감(五感)으로 평가하는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관능검사의 방법으로 재난관리물품의 상태를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성능시험, 이화학시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특별재물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라 특별재물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재물조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조사 기준일 1개월 전까지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특별재물조사의 기본방향
2. 특별재물조사반의 편성
3. 특별재물조사 기간
4. 그 밖에 특별재물조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재물조사를 하는 경우 재난관리물품의 상태 분류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4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30조제4항 및 영 제29조에 따른 재물조정을 자원관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같은 종류의 품명 상호 간에 기록의 착오나 누락 또는 수불(受拂)의 착오로 증감량이 발생했을 것
2. 사무상 착오로 제1호에 따른 증감량이 발생했다는 명백한 근거자료가 있을 것

3. 품명의 형태·용도·성능 및 가격이 유사할 것

4. 재물조정에 대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을 것

② 자원관리관은 재난관리물품의 증감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증감의 발생 원인을 확인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재물조정 대상 재난관리물품의 관리대장 사본 2부
2. 재물조정 대상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증감명세서 2부
3. 그 밖에 관계 증명서 사본(사무상 착오임을 증명하는 문서) 2부

③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자원출납관에게 해당 재난관리물품의 표준서식 등의 비고란에 승인일과 승인근거 및 문서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표준서식 등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한 재난관리물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훼손·망실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0조제5항 및 영 제30조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원출납관에게 출급(出給)을 명해야 하고, 해당 재난관리물품을 사용하고 있는 자원운용관에게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할 때에는 그 자원운용관에게 해당 재난관리물품을 인도받을 자를 명백히 하여 재난관리물품

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

③ 자원관리관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받을 다른 자원관리관에게 그 재난관리물품을 인도하는 자와 인도하는 시기, 장소, 품명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원관리관은 자원출납관에게 재난관리물품의 수입(收入)을 명하여야 한다.

⑤ 자원관리관은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해당 재난관리물품을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에 따라 자원운용관이 재난관리물품을 반납하는 경우 재난관리물품의 상태 분류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에 관한 사항) 영 제31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난관리물품의 종류 및 품명
2.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3. 정비 기간
4. 정비 장소
5. 공급업자 또는 전문 정비업체의 명칭·주소 및 비상연락망(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공급업자 또는 전문 정비업체 등에 의뢰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7조(불용 결정의 기준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재난관리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난관리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재난관리물품
2. 내구연한을 초과한 재난관리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물품
3. 원장비(原裝備)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재난관리물품
4. 규격이나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재난관리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재난관리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재난관리물품
6.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해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재난관리물품
7. 수선이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재난관리물품
8.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원된 재난관리물품으로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무상 양여 등을 위하여 불용의 결정이 필요한 재난관리물품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제46조 및 「행정절차법」 제8조에 따라 응원한 재난관리물품으로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무상 양여를 위하여 불용의 결정이 필요한 재난관리물품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재난관리물품

② 자원관리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불용 결정(승인요청)서 의한다. 다만, 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불용의 결정에 필요한 절차는 해당 재난관리물품의 동원 또는 응원이 끝난 후에 이행한다.

제28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대상) ① 영 제41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2.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3.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4. 관리기관

② 영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동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관리기관을 말한다.

제5장 재난관리재산 및 재난관리인력의 관리

제29조(재난관리재산의 기록·유지 사항) 영 제47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1조 및 영 제45조에 따른 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출 현황
2. 법 제53조 및 영 제56조에 따른 동원에 드는 비용 정산 이력
3. 그 밖에 재난관리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0조(재난관리인력의 기록·유지 사항) 영 제50조제1항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3조 및 영 제48조에 따른 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출 현황
2. 법 제53조 및 영 제56조에 따른 동원에 드는 비용 정산 이력
3. 그 밖에 재난관리인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6장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제31조(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법 제46조제1항제1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이력 정보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축시설에 관한 정보
3.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정보

제7장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4. 법 제53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드는 비용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재난관리자원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32조(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①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자격에 관한 운영계획서
3.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제33조(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심사 방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2조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단체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5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공정한 심사를 거쳐 가장 적합한 기관·단체를 정보센터운영기관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서) 영 제53조제4항에 따른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동원명령서) 영 제55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명령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재난관리자원의 동원명령서에 따른다.

제8장 보칙

제36조(검사) ①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
2. 수시검사는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또는 자원운용관이 교체된 때에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난관리자원과 표준서식을 검사하는 방법 등으로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가 자원출납관 또는 자원운용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등을 검사공무원등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1. 해당 자원출납관 또는 자원운용관이 소속된 관리기관의 자원관리관
2. 제1호에 따른 자원관리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등

⑤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감사공무원 또는 감사원을 지명하여 그로 하여금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또는 자원운용관이 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현황과 표준서식에 기록된 사항 등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행정규칙·조례 등의 제정) ① 중앙행정기관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아닌 관리기관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